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서명옥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9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2.

발 의 자 : 서명옥 · 김정재 · 이현승
김기웅 · 배준영 · 김용태
박성훈 · 조은희 · 조배숙
서범수 · 이종배 · 김태규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,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건의 사후 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사건 발생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및 조사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한바, 초기 대응이 미흡하여 사건이 은폐·축소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 적시에 수사기관에 의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성희롱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,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

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의2제1항 · 제2항 · 제7항 및 제54조).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2제1항 중 “통보하고,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”를 “통보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,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2항”으로,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4조 중 “제31조의2제4항”을 “제31조의2제5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적용례) 제31조의2제1항 및

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의2(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)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(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성희롱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를 포함한다)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,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31조의2(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통보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,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<신 설>	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~ ⑤ (생 략)	③ ~ ⑥ (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)
⑥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	⑦ 제2항-----

의 제출 및 <u>제2항</u>에 따른 현장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	-----<u>제3항</u>----- ----- -----.
제54조(벌칙) 국가기관등의 장이 <u>제31조의2제4항</u>을 위반하여 성 희롱 피해자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54조(벌칙) ----- <u>제31조의2제5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